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및 비용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가액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인 경우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청년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공익사업 수용 등의 사유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신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농지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

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축소하며,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시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안 제5조제21항)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사업 분리시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추가함.

-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5조제26항)

조세회피 방지, 납세 협력 및 세무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벤처기업 명세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명세서를 추가함.

- 3)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중견기업 범위 구체화(안 제7조의2)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내국법인

으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업, 해당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등으로 구체화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포함함.

- 2)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복배제 등 적용대상 합리화(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3)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투자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의2제3항)

내국법인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함.

- 4)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14조제2항)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액의 한도를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함.

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원천기술에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안 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구체화(안 제22조의12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공제대상 웹툰 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세제지원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안 제25조의5 신설)

가속상각이 적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으로 하되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은 제외하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의4제2항)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상으로 일원화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제26조의8)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인원수를 설정하고,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연 단위로 변경하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인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으로 간주하도록 함.

3)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안 제27조의6제8항)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5

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당초 주식등의 증여가액과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의 과세특례 한도와 일치하도록 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사후관리 구체화(안 제35조의6 신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해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주식 보유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피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종료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1)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안 제67조 제3항)
공익사업 수용시 신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특례 지원요건 정비(안 제68조의2제1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주택 가액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함.

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안 제80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변경함.
- 2)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안 제93조의3제9항)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로 인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3)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 추가(안 제93조의8제7항)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정하지 아니함.
- 4)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세부내용(안 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인 청년을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로 하고, 가입대상인 소상공인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장으로 부터 확인을 받은 자로 함.

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거주자의 자녀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상향(안 제95조제2항)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지역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안 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납부이연 및 과세이연되는 세액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처분비율에 따라 이연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전부 처분하는 경우 및 피출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전부 익금산입하도록 하며, 피출자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공모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현물출자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제출의무 및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통지의무 등을 규정함.

3)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안 제98조의8제1항)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7억원으로 상향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구체화(안 제99조의9 제2항)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후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함.

5) 생계형채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절차 등 규정(안 제99조의14 신설)

생계형채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적용을 위한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실태조사일, 징수근란 체납액으로 인정되는 체납액 등을 규정함.

자.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안 제100조의4제8항)

직계존비속에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기준시가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함.

2)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안 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차.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안 제100조의19제3항 및 제100조의27)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 규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함.

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편(안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함에 따라 추가된 환류대상 배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를 투자포함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100분의 80, 투자제외형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추가하며,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 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환류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안 제100조의32제15항)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상생협

력 지출액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보증·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추가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5)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50% 축소함.

- 2)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및 배분(안 제104조의16)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대상에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및 펀드를 추가하고, 과세이연 방법 및 매각시 익금산입 방법을 구체화함.

- 3)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정 예외 사유 신설(안 제104조의18제4항 신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정이 면제되는 천재지변 등 사유를 구체화함.

- 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04조의24 신설)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퍼센트 이상인 고배당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

도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함.

5)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7)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기업을 판정하는 해상물동량 및 운송비용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 해상물동량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연근해를 제외한 지역에서 운송된 물동량으로 규정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추가(안 제110조의5항)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에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추가함.

2)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안 제113조의3 신설)

주세 감면 대상인 저도수 특정주류를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알코올분 8.5도 이하인 주류로 규정하고, 감면한도인 반출수량을 400킬로리터로 정함.

3)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안 제115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시장조성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고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함.

하.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명확화(안 제116조의35제3항)

사업재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한 경우 뿐 아니라 폐기 및 가동중단하는 등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화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안 제121조의2제6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제외함.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안 제121조의2제18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으로 규정함.

너. 조세특례제한 등

1)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범위 확대(안 제130조의7항)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의 범위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
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
입을 입증하는 자료로 명확히 함.

다. 보칙

- 1)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안 제13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
견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 2)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안 제135조의4 신
설)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자료제출 기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건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
4항에 따라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제5조제2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항 중 “제
출”을 “제출하고,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추가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명세서를, 제4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추가
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를 제출”로 한다.

3.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의 관계가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제7조의2제1항 중 “단서 및”을 “단서,”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조의3제1항”을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협력재단”을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호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중 “5)”를 각각 “6)”으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제1호 중 “제23조제10항”을 “제26조의8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로, “청년”을 “연구개발

우수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7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근로자별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의 합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년 상시근로자별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의 합

제11조의2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의 합

⑪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 · 이공계 ·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법인을”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을 “부분 단서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호, 같은 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한다.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총합계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과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	---	---

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연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8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⑦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는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및 국제금융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및 국제금융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채등”을 “채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7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을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주식발행법인”으로 한다.

⑧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설을”을 각각 “시설과 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거나 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및 제4호 중 “사용시간에서”를 각각 “사용시간(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을 포함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는 시설 또는 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22조의11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을 “내국법인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한다”를 “내국법인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frac{\text{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text{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 + \text{그 밖의 투자금})}$
---------------	---	---

제2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시

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으로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8제3항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를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 제4항”을 “법 제29조의8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④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6제8항 전단 중 “100억원까지”를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업의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frac{\text{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해당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text{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등의 수}}$
---	---	--

-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50을 말한다.
-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50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④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중 “법 제58조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63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63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⑯ 법 제63조제1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3조 제9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63조제9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⑰ 법 제63조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제13항 중 “50”을 “4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⑲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⑳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3조 제9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㉑ 법 제63조의2제7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을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으로,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을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내”를 “1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로 한다.

제68조제1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68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제6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68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73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를 취득 이후 5년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 받은 날부터 5년간 매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분기별로 300만원”을 “연 1,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3조의3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1호나목의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전용저축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93조의8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할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갖추어 계좌를 개설하였을 것

제93조의10제1항 중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를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5항제1호”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최초로 청년미래

적금 가입이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34세 이하인지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임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상공인 가입자격 확인서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을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주 및 그 세대의 배우자의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서로 다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따른 그 세대의 배우자와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제9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양도차익} \times \left(\frac{\text{임대종료일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right)$$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7조의9) 제1항 중 “법 제97조의9제1항”을 “법 제97조의10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97조의9제2항”을 “법 제97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의9제3항”을 “법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제9

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 1)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인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인 값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항 제2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인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산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인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항 제2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⑥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 나목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

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
2호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8조의8제1항제2호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4제2항 중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을 “속한”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법 제30조의3제5항”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으로 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연속하여 3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를 실태조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일의 다음날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납액”이란 채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⑤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멸대상채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15제4항에서 “신청일”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⑧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채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제99조의5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6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을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100조의27제6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을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

호에 나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70”을 “80”으로, “15를”을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23항 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마.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바. 제2호다목에 따라 기업소득의 범위에서 뺀 적립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

⑧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제외한다. 제100조의3제9항(중전의 제8항) 제2호 본문 중 “금액”을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금액을 해당”을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나목”을 각각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항(중전의 제12항) 및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나목”을 각각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다목”을 “법 제100조의3제2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항(중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5.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10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만원”을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2.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3.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

우: 2만원

4.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한 경우: 1만원

제104조의16제1항 중 “대통령령”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을 “전단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을 “법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이란 제3항에 따라”를 “이란 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법 제10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 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
- ⑥ 법 제104조의1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체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초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자산”이라 한다)하고 해당 처분가액으로 새로운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 제104조의16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나.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처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다. 대체취득에 사용한 비율: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 \frac{\text{새롭게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text{처분자산의 처분가액}}$
--

2.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해당 처분가액으로 새로운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지 않는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에 제1호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4조의1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 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21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을 것

제104조의21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복귀 후의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
사업장에서	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량에
발생한 해당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과세연도의 ×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소득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된 경우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복귀 후의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
사업장에서	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발생한 해당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과세연도의 ×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소득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제104조의21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 ⑩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제2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현금배당총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제27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성향은 현금배당총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제27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제104조제27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04조제27제3항에 따라 분리과세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4조제27제4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을 “해상물동량”으로,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자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출하는 비용일”을 “발생한 물동량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을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30 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를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제1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주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는 알코올분 8.5도를 말한다.

제115조제1항 중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으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제1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과생상품시장업무 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15조제5항제2호 중 “유동성평가기간”을 “유동성평가기간(과세연도 중 신규로 시장조성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거래대금비중”을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 신규로 시장조성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조성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5조제8항 중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16조의35제3항 중 “중복자산”을 “중복자산(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교육비

⑱ 법 제126조의2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제1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중전의 제4항) 및 제9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4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6항), 제11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중전의 제9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5항”을 각각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0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7항”을 “법 제142조제8항”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세감면의 신설·확대·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와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을 비교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감면 신설·확대·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효율성·형평성 측면의 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제도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세출예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6항”을 “법 제142조제7항”으로 한다.

제1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규모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0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4.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사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용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

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공공매입입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

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4항제1호 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의 상시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으로 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종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천만원

제37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

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법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5)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6)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말한다)의 구매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

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9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 중소기업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2. 인력개발

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차.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 형자 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삭제 <2025. 11. 28.>
	나. 전기 구동차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 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4)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감축 등을 위해 엔진 열 효율(공급된 연료에너지에 대해 출력되는 유효일의 비를 말한다)을 45%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2. 지능 정보	가. 인공 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통신·검색·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 (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 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	

		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 등)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μ m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음극 소재 설계·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형상(forming)의 설계·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cm/cm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 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 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 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평가하여 유지·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불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진단·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징적인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

		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자. 스마트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상태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 및 저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 27017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상에서 모니터링하는 기술
3.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1)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기존 서비스 및 제품에 지능화·자동화 등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신뢰성·고속성·실시간성·저전력 등을 통해 10% 이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어 소프트웨어 기술: 중앙연산장치(CPU)에 보조연산장치·연산가속장치 등의 여러 컴퓨팅 장치를 결합하여 고효율·고성능(전력소모량 등 비용 효율성을 10배 이상 개선하거나, 연산속도를 10배 이상 개선한 것을 말한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대규모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10,000개 이상의 노드(센서, 컴퓨터 등) 지원을 대규모로 분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및 100개 이상의 병렬성에서 99.999%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고신뢰 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메모리와 다른 대용량 비휘발성 메모리를 활용하여 컴퓨터·서버·휴대단말기 등의 컴퓨팅 속도를 20% 이상 개선하거나 메모리 용량을 4배 이상 증대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분석 또는 대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자동분석·대응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영상 기반 안전·감시·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객체(사람·사물)나 이상상황(범죄·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보안기술: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융합서비스·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저전력·경량화되면서도 외부 공격(탈취, 파괴, 위·변조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변경되는 것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후각·청각·미각·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4)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해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나. 문화 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엔진·게임제작도구·게임 UI(User Interface)·게임 운영환경 등의 개발 또는 기능 개선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시·청각화 관련 기술,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시나리오 구현 기술, 학습·의료 등 분야의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 게임 콘텐츠 응용 기술
		2)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방송 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위한 사전시각화(pre-visualization) 및 그래픽 품질 개선 기술
		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기술: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위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처리 관리 기술, AI 머신러닝을 통한 애니메이션·에셋 자동생산 기술, 게임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제작기술,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
		4)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웹툰 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개발 기술,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5. 차세대정보바이스	가. 지능형반도체·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 VR (Digital Video Recorder) 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2) 초소형·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설계·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제조 기술: SoC (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장비 설계·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과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제조·패키지 기술: 물리적·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관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 μ m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술
	7)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제조 기술
	8)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12nm 이하급 D램과 220nm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제조 기술
	9)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BCDMOS(Bipolar /Complementary/Double-diffused metal-oxide-semiconductor) 설계·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초절전 전

	력반도체 0.13 μ m 이하 BCDMOS 설계·제조 기술
	10)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기존 유도방식 무선충전 대비 충전 자유도가 높은 고출력 공진방식 무선·급속 충전 기술 및 원거리 RF(Radio Frequency) 전력전송 기술
	11)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해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	1)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 ₂)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퀴즈, 스테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관 개발 및 제조기술: 14nm 이하급 D램과 170nm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셀 반도체용 기관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14nm 이하급 D램(DRAM)과 170nm 이상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7)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

	<p>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p> <p>8)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p> <p>9)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p> <p>10)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cm²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μm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p>
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p>1)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저온폴리실리콘(LTPS,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또는 산화물(Oxide) TFT(Thin Film Transistor, 전하이동도 8cm²/Vs 이상) 기판 상에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고화질(고해상도, 고색재현, 고균일, HRD)을 구현한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p> <p>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p> <p>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 [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p>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p>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합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μm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p>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p> <p>7) 친환경 QD(Quantum Dot)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적은 소비전력으로 고색재현 및 화학적·열적 안정성 개선이 가능한 QD 나노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p>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p>가. 5세대(5G: 5th generation) 및 6세대(6G: 6th generation)이 동통신</p> <p>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p> <p>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p> <p>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소자에 적용되는 기술</p> <p>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μsec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재 RF·안테나 및 모뎀 및 부품·소자에</p>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 (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 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 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헬스	가. 바이오·화합물의약	1) 삭제 <2023. 8. 29.>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삭제 <2023. 8. 29.>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해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 기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및 혁신형 신약을 제조하거나 혁신형 신약의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하되,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은 제외한다],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삭제 <2023. 8. 29.> 10) 삭제 <2023. 8. 29.> 1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식물체 및 식물세포 기반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탐색, 디자인, 식물배양, 정제 및 대량생산 등을 통해 백신, 치료제, 진단제 등의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술
	나. 의료기기·헬스케어	1)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한 영상 기술 간 융합(X-ray - 초음파, 광음향 - 초음파) 및 정밀치료를 위한 초음파 영상유도 기반의 체외충격파 치료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우수한 유연성과 고강도의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시술에 따른 혈전증

	<p>및 재협착률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 기술</p> <p>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p> <p>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기술</p> <p>7) 신체기능 복원·보조 의료기기 기술: 생체역학·바이오닉스 등 첨단 의공학 기술을 통해 영구 손상된 신체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p>
	<p>1)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가압·진공·과열증기(SHS, Superheated steam) 및 증기직접주입법(DSI, Direct steam injection) 등을 이용한 고온·고압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p> <p>2)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제조 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기능 물질의 탐색·분석·동정(identification)과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기능성 평가 및 원료 가공 또는 대량생산 기술</p>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p>3) 신제품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분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제품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가공처리 기술</p> <p>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한 균주개발, 최적활성 연구,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p> <p>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약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p> <p>6) 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정제하는 기술, 동물세포나 조직을 배양·분화하는 기술 및 단백질 또는 세포를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지지체 등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p> <p>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p>
	<p>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 등 유효성분을 추출·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p> <p>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 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p> <p>3) 신규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화학 소재 개발 및 미생물 발굴 바이오 파우드리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p>

라. 바이오 화학

		장품 소재, 바이오생리활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미생물 확보를 위한 유전자 편집 등의 합성생물학 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시험, 학습 등의 순환 과정의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8. 에너지·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멤브레인(Membrane)· 전해질·저가 분리판·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양극·음극·전해질)·셀(Cell)·모듈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추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4)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5)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6)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용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나. 발전 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 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부품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 기술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3)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 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부품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 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p>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p>
	<p>6) 친환경·저탄소 후행 핵주기 기술: 해체 엔지니어링, 해체 원전 계통·기기·구조물 제염기술, 금속·콘크리트구조물 절단기술, 해체 폐기물 처리·감용기술, 해체현장 방사능 측정 및 부지복원 기술, 준위별 방폐물 관리비용 평가기술, 처분부지 조사기술, 처분시설 설계·시공 기술, 처분시설 다중 방벽 장기성능 평가 기술, 피폭선량 평가 기술(처분시설 안전성 평가 기술), 처분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방폐물 인수·처리 기술, 방폐물 운반·저장 기술 및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관리 기술</p>
	<p>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제어 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p>
	<p>8) SMR(Small Modular Reactor) 설계 및 검증 기술: SMR 노심 설계 및 해석기술,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유체계통 설계기술,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용 계측제어계통 표준설계 기술, 주요기기 배치 및 구조 설계 기술, BOP(Balance Of Plant) 계통 설계 기술,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술, 중대사고 분석 및 대처 기술, SMR 노심 검증기술, 열수력 검증기술, 계통기기 검증기술, 모듈 통합 검증기술, 열수력 통합 해석기술, 필수 계통 안전 해석기술</p>
	<p>9)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개발·제조기술, 혁신형 제어봉집합체 개발·제조 기술, 무봉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체형 가연성흡수봉 설계·제조기술, 증기발생기 전열관 3D 벤딩 및 검</p>

	<p>사 기술,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일체화된 원자로모듈을 제조하는 기술</p>
	<p>10) 대형 원자력발전소 제조기술: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원자로·내부구조물, 핵연료 취급·검사장비, 증기발생기·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터빈·주발전기 및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기술</p>
	<p>11)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분말-열간등방압성형(PM-HIP) 기술, 전자빔 용접(EBW) 기술, 다이오드 레이저 클래딩(DLC) 기술 및 원전기자재 적응제조 기술</p>
라. 오염 방지·자원순환	<p>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기술,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기술, 0.3μm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기술 및 공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기술</p>
	<p>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운송·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부품의 설계·제작·시험·평가 기술</p>
	<p>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circ}$C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p>
	<p>4) 폐플라스틱 등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 폐플라스틱·페타이어·폐섬유의 선별·세척, 파쇄·용융·배합 등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p>
	<p>5) 폐플라스틱 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페타이어·폐섬유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p>
	<p>6)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p>

		<p>생분해성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기술</p> <p>7)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기술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기술</p> <p>8) 폐수 재이용 기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업용수 수질로 재생산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수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p> <p>9) 폐섬유의 화학 및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섬유소재 제조기술: 혼합재질 폐섬유의 화학 및 생물학적 해중합, 정제·분리·원료(모노머) 회수 및 재중합 및 방사기술</p> <p>10) 이차전지 제조공정 염폐수 자원순환을 위한 전해조 시스템 및 전·후처리 통합 기술: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염폐수를 원료로 하여 전기분해를 통해 재자원화하는 전해조 시스템과, 전해조 구동 및 제품화에 적합하도록 농도·순도 등을 조정하는 농축, 정제 등 전·후처리 공정을 연계하는 자원 회수형 기술</p>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p>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p> <p>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이상)·고내한성(-153℃ ~ -273℃)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p> <p>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p> <p>4) 의류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p>

		<p>나 체액·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류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 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p> <p>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p> <p>6)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 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가공 기술</p> <p>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p> <p>8)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유해물질을 여과·분리·차단하는 1μm이하 극세 장섬유 부직포 제조기술과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이상의 고성능 정밀여과 복합필터 제조 기술</p>
	나. 초경량 금속	<p>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p> <p>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구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p>
	다. 하이퍼플	<p>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p>

	라스틱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 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 ³ /Kgf·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구리 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고성능·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마. 특수 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게목강관·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 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바.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임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mm ³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 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접착·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접착·접착 소재 제조 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 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m ² ·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
	사. 희소 금속·핵심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업화타이타늄(TiCl ₄), 스펀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타이타늄(TiO ₂) 등의 소재 개발·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과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과 제조 기술 3) 증회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 결정립도 5μm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증회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증회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술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기술 5) 고용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저순도 고용점 금속을 고밀도 열원을 통해 4N급(99.99%) 이상의 초고순도 금속으로 정제한 후, 염소 또는 불소계 반응원을 이용해 염화물 또는 불화물로 전환하여 반도체용 전구체 원료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10. 로 가. 첨단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

봇	제조 및 산업로봇	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하며 5Port 이상 대응 가능(수평 이송범위 2,100mm 이상 및 수직 이송범위 900mm 이상)한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플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고중량 기판을 핸들링할 수 있는 로봇의 설계·제조 기술
		3) 실내의 자율 이동·작업수행 로봇 기술: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Flat panel display)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고중량(400kg 이상)의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제조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가반하중 1kg 미만) 및 중대형(가반하중 25kg 이상) 로봇, 첨단 안전기술(PL e, Cat 4 또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등급 이상)이 탑재된 로봇 또는 7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을 설계·제조·제어하는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생산과정 내 용접 공정의 자동화 및 용접 품질관리를 위한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로봇, 용접전원장치, 용접용센서 설계·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처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로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11. 항공·	봇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 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지시용 매니플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 진료·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가사작업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동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4) 직관적 교시기술: 코딩(Coding) 없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거나 직관적인 방식으로 로봇의 동작을 입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	

우주	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조종기,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10kg) 이상 물품의 비가시권 비행을 100%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제조 기술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소재(열전도율 5k

나. 우주	cal/m·h 대비 10% 이상 개선)·부품(세계 최고 CPU 속도 대비 약 66% 이상 처리성능 개선)·장비(다지점 배달용 물품 적재함, 물품배송 드론용 도킹스테이션 등의 경량화)의 설계·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 탑재체(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을 말한다)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체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체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를 말한다),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 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4) 위성통신 송수신 안테나 개발 기술: 통신목적 인공위성과의 안정적인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위해 안테나가 탑재된 대상(항공기 등)이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자이로센서(Gyro sensor)·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거나, 안테나가 지향하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자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중·저궤도 위성) 인공위성 궤도 데이터·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추적(Tracking)하는 기능을 가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작하는 기술		
12. 첨단 소재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

재·부품·장비	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등방블록·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5) 고효율·고용량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 기술: 나노 실리콘 결정크기(5nm 이하) 제어 및 카본코팅을 통해 부피팽창 문제 해결과 고효율(88% 이상), 고용량(1800mAh/g 이상) 음극재를 구현하는 소재 기술
	6) 전극용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이를 활용한 도전재 제조 공정 기술: 비철계 촉매를 사용하여 전도성이 우수한 전극용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를 제조하는 기술 및 CNT를 활용하여 열화 현상을 줄이고 용량 및 수명을 개선한 도전재를 제조하는 공정 기술
	7)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 기술: 리튬 광석 또는 염호 등 천연 리튬 자원으로부터 고순도 99.5% 리튬화합물(Li2CO3, LiOH 등)을 제조하기 위한 선광·제련 공정 기술
	8) 니켈광 대상 니켈 회수공정 기술: 니켈광(라테라이트 등)으로부터 니켈을 회수하기 위한 선광·제련(고압산침출, 질산침출 등)·추출·정제 기술
	9) 회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회토류 원광으로부터 순도 95% 이상 회토류 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또는 순환자원(폐연구자석, 폐형광체, 폐촉매 등)으로부터 회토류 금속을 회수하는 회수율 85% 이상의 공정 기술
	9)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규소 원소를 강중에 침투시켜 고규소(Si 함량 4~7%) 저철손 특성을 보유한 전기강판을 제조하는 기술
10)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10층 이하 기능화 그래핀 기반의 초격차 고용량, 고신뢰성, 장수명 특성을 구현하는 전자소자·에너지저장장치용 융복합 첨단소재 기술	

나. 첨단부품	11)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기술: 500℃에서 43 mW/mK 이하의 열전도도[Aerogel 밀도(섬유 제외) 70kg/m ³ 이상 120kg/m ³ 이하]를 갖는 고단열 소재 제조 기술
	12)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기술: 초소형, 초고용량 MLCC용 80nm 이하급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합성 및 초박층 내부전극용 초미세 니켈 페이스트 제조 기술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밸브 부품 설계·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 전달부품 설계·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기체의 압력에너지를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 ⁻⁹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μm)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콘덴서의 소재·부품 제조기술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설계·제조기술: 각종 펌프(Pump), 압

	<p>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부품을 설계·제작·시험·평가하는 기술</p>
다. 첨단 장비	<p>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방향 위치결정 반복 정밀도(국제 표준 ISO 10791-4, 각 허용차의 50% 이내)를 만족하면서 동시 제어 5축 이상인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p> <p>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 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제조 기술</p> <p>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스톨을 이용하여 평면·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p> <p>4) 첨단 터닝센터 설계·제조기술: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단방향 위치결정 반복 정밀도(국제 표준 ISO 13041-4, 각 허용차의 50% 이내)를 만족하는 절삭가공장비 설계·제조 기술(ISO 7 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p> <p>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플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률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제조기술</p> <p>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후, 베어링으로 전달되</p>

	<p>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p> <p>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효율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제조하는 기술</p> <p>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제조기술</p>
13. 탄소 중립	<p>가. 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p> <p>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시멘트공정 및 선박 등에서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p> <p>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p> <p>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p> <p>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는 기술</p> <p>5)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대량발전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액화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 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p>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산업 부생가스(CO, CH ₄)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 ₄)를 화학·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화학물·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기술
나. 수소	1) 삭제 <2023. 6. 7.>
	2) 부생수소 생산기술: 철강제조과정, 석유화학과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3) 삭제 <2023. 6. 7.>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LNG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설계기술,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팽창기 등) 설계 및 제조기술
	5) 삭제 <2024. 2. 29.>
	6) 삭제 <2024. 2. 29.>
	7) 삭제 <2023. 6. 7.>
	8) 삭제 <2023. 6. 7.>
	9)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액화수소 운반선 내에 액화수소를 저장·적하역하기 위한 극저온 화물창 설계·제조 기술, 카고핸들링 기술 및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 제조 기술
	10) 암모니아 발전 기술: 암모니아 연료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석탄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연료전지, 가스터빈, 미분탄 보일러 및 유동층 보일러에 적용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
	11) 산업용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설계·제조 기술: 수소 연료를 연소(혼소·전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증기·온수를 생산하는 산업용 수소 보일러 및 이를 구성하는 수소 연소기 부품을 설계·제작·운용하는 기술
	12)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선박의 추진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연료전지 적용 기술
	13)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특화된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에서 800℃ 이하의 운전온도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연료극 지지형셀, 셀·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기술
	2) 삭제 <2023. 6. 7.>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800℃ 이하의 운전온도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개발·제조기술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 셀 및 고효율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축(shaft)·베어링(bearing)·이음쇠(coupling)·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 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 (Blade) 설계 및 제조 기술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 · 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 · 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9)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깊이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 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 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항공유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폐기물 액화 · 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 · 가스화 기술
	12) 미활용 폐열 회수 · 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 · 유기냉매 · 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 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 · 장조장 특성을 갖는 해저케이블(HVAC 345kV 이상 또는 HVDC 500kV 이상)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하는 내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semi-wet 방식, 66kV 이상) 설계 · 제조 기술
	14)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M10 이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공정기술 및 고효율(출력밀도 210W/m ² 이상) 모듈화 집적기술(고효율 셀 기술, 고집적 모듈 기술)

	15)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 · 제조 · 설치 기술: 탄소배출량 655 kg · CO ₂ /kW 이하의 태양광 모듈 설계 · 제조 및 설치 기술(페로브스카이트 · 결정질 실리콘의 경우 설치기술만 포함)
라. 산업 공정	1) 삭제 <2024. 2. 29.>
	2)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제철소 발생 합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전로 공정에서 스크랩의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상취련로 및 노내 2차 연소 기술(복합취련전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탄산칼슘(CaCO ₃)이 없는 물질(Rankinite, Wollastonite 등)로 대체하는 공정기술과 이산화탄소에 경화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시멘트 산업에서 클링커 원료인 석회석을 산화칼슘(CaO)를 함유한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대체하는 공정기술로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기술, 공정운전 최적화 기술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 · 원료 대체기술: 시멘트 제조공정 중 석회석 등 탄산염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소재 · 공정기술과 수소, 바이오매스, LNG 등 친환경 열원 및 가연성 순환자원연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 ₂) 발생을 저감하는 소성 기술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시멘트 소성공정의 열원인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연료 제조기술, 고효율 연소기술 및 연소 후 후처리 기술
	8)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바이오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고분자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시키는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10) 반도체 · 디스플레이 식각 · 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p>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GWP(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설비 및 부품개발, 공정설계 및 평가기술</p> <p>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방법의 배출저감기술</p> <p>12) 해상(FSRU) 및 육상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기술: LNG 냉열의 회수 공정을 이용하여 재기화 송출 용량이 750 MMSCFD(Million Metric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이상이고, 소요전력 20퍼센트 이상 절감 및 온실가스 20퍼센트 이상 감소 가능한 냉열 발전이 결합된 재기화 시스템의 공정 설계 및 설비 제작 기술</p> <p>13)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단조,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기술 및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p> <p>14) 전기로 저탄소원료(직접환원철 · 수소환원철) 활용기술: 전기로 용해공정에서 저탄소 원료인 직접환원철 또는 수소환원철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p> <p>15)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전기로 용탕과 고로 용선을 혼합하는 합탕기술을 통해 기존 고로공정 대비 20% 이상 탄소배출이 저감된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기술</p> <p>16)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 선별기술: 철스크랩을 전기로공정에 투입하는데 있어, 데이터화된 영상이미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철스크랩 판정 · 선별하는 기술</p>
<p>마. 에너지 효율 · 수송</p>	<p>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 · 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p> <p>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 · 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 ·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 (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p>

	<p>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p> <p>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개별 또는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 · 평가 및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 설계 · 구축 기술</p> <p>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설계 · 제조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 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p> <p>5) 데이터센터 냉방 · 건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 냉방 · 건조 시스템 및 IT 기반시설 장치를 제어하여 전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기술</p> <p>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 설계 · 제조기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수소가스(LH₂)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der) 등의 부품을 설계 · 제조 · 시험 · 평가 기술</p> <p>7)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과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 · 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p> <p>8)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 · 부품을 설계 · 제작 · 시험 · 평가하는 기술</p> <p>9) 친환경 굴착기 설계 · 제조기술 :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p>
--	---

		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 생산 기술
		10)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기술
		11)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액화질소(끓는 점 -196℃), 액화수소(끓는 점 -253℃) 등 -196℃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자체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 기술
		12)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발전기 모터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발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선박의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13)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IEC 60034-30-1 규격의 IE4급 이상의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
		14)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해양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이송할 수 있는 부유식 플랫폼 설계 기술
		15)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냉매 배합·물성 설계, 냉매-냉동기유 호환성 검증, 냉매 제조·충진·저장·물류 공정 개발, 냉매 원재료 및 중간체 합성·정제 공정 설계, 안전·환경·성능 인증, 냉매 회수·재생(RRR) 기술
14. 방위 산업	가. 방산 장비	1) 추진체계 기술: 유무인 항공기, 기동장비, 유도무기, 함정 등에 장착하는 터보제트엔진, 터보샤프트엔진, 터보프롭엔진, 터보팬엔진, 왕복엔진의 완제엔진, 부체계(엔진제어, 연료, 윤활, 기어박스 등), 구성품(팬,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노즐 등), 소재(내열·경량합금, 복합재, 고온코팅 등)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 기술
		2) 군사위성체계 기술: 군사용 위성체계 중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의 위성체계(전력체계, 자세제어체계, 위성탑재컴퓨터, 송수신체계, 구조체 등), 구성품(위성통신송수신 안테나, 광학장비, 영상레이더, 항법체계 등), 관련 소재, 지상장비, 발사체(고체연료)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하는 기술
		3) 방위산업물자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방위산업 물자등의 수출 또는 그 소재·부품·장비의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방위산업물자등 또는 그 소재·부품·장비의 개조, 개발, 형상변경, 성능개량, 양산을 위한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기술
	나. 전투 지원	1)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에 필요한 환경인식기술, 위치추정기술, 자율임무 수행기술, 유무인협업기술, 무선통신기술, 네트워크 보안기술, 의사결정지원기술, 원격통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하는 기술

비고: 위 표에서 소재·부품·장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분야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다.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AP(Application Processor),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rder)등의 화상 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라.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UWB(Ultra-wideband),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설계·제조 기술

	<p>마.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물리적·화학적 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판단·통신 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센서(sensor)·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μm이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이미지센서 기술, HDR(High Dynamic Range)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설계·제조 및 패키징 기술</p>
	<p>바.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 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술</p>
	<p>사.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p>
	<p>아.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μm이하):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및 배터리)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초절전 전력반도체(0.35μm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PMIC) 설계·제조 기술</p>
	<p>자.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퀴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조정하는 것을 주기능으로</p>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키지에 필요한 전원 전압을 생성·제어하는 반도체(PMIC)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차.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 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카.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타.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5nm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셀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파.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급 이하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M), PRAM(Phase-change RAM), ReRAM(Resistive RAM),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설계·제조기술
하.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거.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너.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더.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icle), 합성 퀴즈, 스테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러.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머. 고순도 석영(퀴즈)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기술
버.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cm ²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μm 이하) 형성 재료 제조 기술
서.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7nm이하 파운드리 공정을 위한 Library(Standard Cell, I/O, Memory Compiler), IP와 해당 Library, IP를 모바일, 자동차, 서버, AI 등 응용 분야별로 최적화시킨 Derivative Library, Derivative IP의 설계 및 검증 기술
어.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동작속도 250MHz 이상 SoC(System on Chip) 반도체, 6GHz 이상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 모바일용 CMOS 이미지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기술 및 해당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검사속도 500Mbps 이상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μm이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 기반 프로브카드의 설계·제조 기술
저.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및 칩을 수직 적층하는 3D 적층형 반도체 및 관련 소재, 장비 설계·제조 기술
처. AI 컴퓨팅을 위한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의 설계·제조와 관련 신소재 및 부품 개발 기술: 고속 신호 전송을 위한 저손실 특성(Ultra Low Loss) Df 0.002미만, 고밀도 전력 처리와 효과적 열분산을 위한 열신뢰성 평가(Thermal Cycling Test) 기준 -55℃~160℃/500 cycles 이상, 대규모 데이터 전송 및 전력 분배를 위한 PCB 구조 18층 이상, 반도체 및 부품 실장 안정성

	특성 CTE 1.5% 이하의 고성능 AI 가속기용 CCL(Copper Clad Laminate) 개발 및 제조기술
2. 이차전지	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팩의 중량당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모듈 및 팩 설계, 제조 기술
	나.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이차전지 셀을 기준으로 중량당 에너지밀도가 265Wh/kg 이상 또는 1시간 기준 방전출력 대비 6배 이상의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충방전 1,000회 이상의 장수명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다.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의 잔존용량, 출력특성 등의 성능 평가 기술 및 안전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
	라.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마.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중량당 방전용량이 600mAh/g 이상인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재 제조기술, 수명 증가를 위한 안정성 향상 기술, 리튬계 원자재, 금속전구체 등 양극재 원료기술 및 관련 장비 제조기술
	사.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충방전 1,000회 이상이 가능한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의 고온특성 향상을 위한 안정성 향상 기술,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카본계 또는 금속계의 원료기술 및 이의 제작에 필요한 장비 제조기술
	아.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수명특성, 신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 및 저온특성, 장수명,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액 제조기술과 안정성 향상기술 및 관련 원료·장비 제조기술
	자.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차.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로 제조·가공하는 기술
3. 백신	가.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해(예방용 백신)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나. 비임상 시험 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다.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 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 기술
	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마.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바.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사.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리콘산화물(LTPO)·저온폴리실리콘(LTPS)·산화물(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나.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nm)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p>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1 \times 10^{15}/\text{cm}^3$ 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50\mu\text{m}$ 크기 이하의 R·G·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p> <p>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전자이동도 $9\text{cm}^2/\text{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QD)·화소격벽·폴리이미드(PI) 코팅 소재 등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p> <p>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전자이동도 $9\text{cm}^2/\text{Vs}$ 이상의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 및 이와 관련 제조에 사용되는 등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p> <p>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유기증착기(Evaporation), 잉크젯장비(Inkjet), 봉지장비(Encapsulation), FMM(Fine Metal Mask) 등 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부품 제조 기술</p> <p>사.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께 $100\mu\text{m}$ 이하 초박형유리(Ultra Thin Glass, UTG) 및 UTG 광학증착·코팅 소재, 투과율 80% 이상인 초박형 유·무기 하이브리드 필름 등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기술</p> <p>아.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고효율, 저결함 에피성장을 위한 고순도(99% 이상) 금속유기(Metal-Organic) 가스와 기판(substrate), 전극 형성을 위한 접합소재,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청색 20%, 녹색 10%, 적색 5% 이상의 에피기판·칩 등 화소 형성을 위한 소재·부품 제조 기술 및 Micro LED 성장을 위한 에피 공정, 에피 LED 칩 제조를 위한 분리·보호막 공정, 백플레인 기판의 화소 영역에 칩을 전사·접합하는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조 기술</p>
5. 수소	<p>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원자력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계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부품·</p>

	<p>스택(stack)·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p> <p>나.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 탄화수소 원료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고체탄소 등 탄소화합물을 포집·전환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p> <p>다.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저장·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p> <p>라.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p> <p>마.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저위발열량(LHV, Lower Heating Value)에 따라 산출된 운전효율을 말한다] 6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p> <p>바.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p> <p>사.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 부품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 기술</p> <p>아. 수소환원제철 기술: 철강 제조공정에서 수소(H_2)를 사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고, 전기용융로에서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기술</p> <p>자.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에 흡착 또는 흡착하여 저장하는 기술</p> <p>차.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수소(H_2)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를 생산하는 기술</p>
6.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p>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라이다 센서(LIDAR sensor) 기술, 주행환경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이를 융합 처리하는 시스템 기술</p>

나.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외 통신기술
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차선·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고장제어·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조향·제동·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라.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마.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바.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탑승자의 안면인식 등을 통한 신체적·감정적 변화 감지 기술과 탑승자의 모션·음성·터치 등을 통해 운전·내부조작 등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술
사.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선박의 자율항해, 원격제어, 경제운항 및 관리운항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선박 주변 해상 상황을 인지·분석하여 최적 경로로 운항하는 자율운항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플랫폼 제작 기술, 기관·화물 등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기술, 수집된 정보를 처리·분석하는 선박 모니터링·시뮬레이션 기술, 기관제어·고장예지·원격진단·원격정비 등의 선박 통합제어 관리 기술, 선박-육상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및 ROC(Remote Operation Center) 기술
아.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가스화물(LNG·LPG·에탄·암모니아·수소·이산화탄소)의 저장·운송·적하역시스템(화물창, 연료탱크, 카고핸들링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LNG·LPG·암모니아·수소·에탄·메탄올·에탄올·원자력) 및 전기에너지를 추진동력원과 선내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추진·발전시스템(연료공급시스템, 동력발생장치, 에너지저장·전력변환·배전·전력관리, 추진장치·제어 등)의 소재 개발 및 설계·제조 기술
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환경친화

	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기반 설계·생산 공정 구축을 위한 설계 자동화 기술 및 건조 공정의 데이터 취득·분석·검증을 통한 생산운영기술
7. 바이오 의약품	가.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유전자재조합 기술, 세포배양·정제·충전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호르몬·펩타이드·핵산·핵산유도체 등의 원료 및 재료를 확보하여 작용기전을 증명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유전자치료제·항체치료제·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이용·개발하는 기술과 바이오 신약을 제조하는 기술
	나.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배양단계 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다. 비임상 시험 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라.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한다. 이하 마목 및 바목에서 같다]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마.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바.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사.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배지, 첨가물 등),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제형화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제조기술
	아.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 장비와 바이오의약품 품질 분석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8. 인공지능	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과제를 인간 전문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된 거대 인공지능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을 개발하여, 사용자 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여 인공지능 스스로 목표 설정, 계획, 실행 및 피드백을 자율적으로 반복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장치(Hardware) 기반의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기술로서 동적인 실제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및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자율적인 최적의 의사결정, 제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다.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고도의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및 멀티모달 학습), 추론 기술(연쇄사고 추론기법, 분기구조 기반 추론기법 및 다중 에이전트 추론기법)과 인공지능 기초모델의 조합 및 연동을 통해 지능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라.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기술: 저전력·고효율로 인공지능의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마.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 표현구조를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비고: 위 표에서 소재·부품·장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신 설>	제1조의2(정의)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 10. (생략)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 ----- ----- ----- ----- 1.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㉔ (생략) ㉔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㉔ (현행과 같음) ㉔ ----- ----- ----- -----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⑩ (생략)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생략)
 - 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

⑤ ----- 기술보증기금,
-----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2. (생략)

④ ~ ⑥ (생략)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생략)
 -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2. (생략)

⑧ ~ ⑩ (생략)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 ⑥)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⑥)-----

2.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2. (생략)

⑦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상시근로자의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 상시근로자 수:

-----.

1. ----- 제26조의8 제2항-----

2. (현행과 같음)

⑦ -----
--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는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

$$\frac{\text{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text{의 합}$$

2.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신 설>

⑧ ~ ⑩ (생략)

<신 설>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frac{\text{청년 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text{의 합}$$

3.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frac{\text{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text{의 합}$$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

④ (생략)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
-- 부분 단서 및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벤처기업의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총합계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과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5항-----

1. ----- 법 제13조의2제5항-----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생략)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생략)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2. (생략)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3조의2제5항-----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1. 2. (현행과 같음)

3. -----

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생략)

나. (생략)

4. (생략)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⑪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

가.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 연간 2천만원 -----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정하여 추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한다.

⑫ ~ ⑭ (생략)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 200만원 -----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 6. (생략)
-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 ⑩ (생략)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 7. -----
8천만원 이상인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⑦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외국법인 비

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
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
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
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
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인 경우

⑪ ~ ⑮ (생략)

⑯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
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
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
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
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보관해
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
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4. -----

----- 사용
시간(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
해 사용되는 시간을 포함한
다)에서 -----

⑪ ~ ⑮ (현행과 같음)

⑯ -----

----- 사용되는 시설 또는 한
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
는 -----

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
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⑰ (생략)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
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
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
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
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
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
의6제1항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⑰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
----- 내국법인-----

----- 내국
법인을 -----

----- 내국법인
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문화산
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frac{\text{영상콘텐츠 제작비용}}{\text{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 \times \frac{\text{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text{(문화산업전문회사 총 출자금 + 그 밖의 투자금)}}$$

④·⑤ (생략)

<신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신 설>

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으로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⑥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하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

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 6. (생략)
- ③ ~ ⑰ (생략)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1. (현행과 같음)
2. -----

----- 8천만원 -----
3. ~ 6. (현행과 같음)
- ③ ~ ⑰ (현행과 같음)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후단 신설>

가. ~ 다. (생략)

2. ~ 5. (생략)

④ 법 제2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 말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으로 한다.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을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을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

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

<삭 제>

⑥ -----

--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⑧ ~ ⑬ (생략)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략)

<삭 제>

<삭 제>

⑦ 법 제29조의8제4항 -----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0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⑦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8항·제9항 및 법 제30조의6제5항

<삭 제>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업의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 ---.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⑨ ~ ⑮ (생략)

<신설>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현물출자받은 외국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50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내국법인의 현물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등은 내
 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하
 여 계산한다.

④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
 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
 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
 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별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을 말한다.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
 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
 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등은 내
 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하
 여 계산한다.

④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
 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
 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
 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
 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별
 제58조제1항제3호-----

 -----.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
 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전주
 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

1.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
 시의 관할구역
2.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
 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⑥ ~ ⑬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⑥ ~ ⑬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3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
 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
 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
 다.

⑤ 법 제63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
 비스업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제11항에 따라 납
 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
 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

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3조 제9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63조제9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신 설>

⑰ 법 제63조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의8 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⑫ (생 략)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⑬ -----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⑭ ~ ⑰ (생 략)

<신 설>

40 -----.

⑭ ~ ⑰ (현행과 같음)

⑱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 설>

⑲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 설>

⑳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

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3조 제9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신 설>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

① 법 제63조의2제7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

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⑥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삭 제>

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⑦ ~ ⑬ (생략)

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⑮ 법 제66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4항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⑩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⑥ (생략)

<삭 제>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 ⑥ (현행과 같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⑧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

음)

<삭 제>

<삭 제>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현행

략)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

-----.

가.·나. (생략)
④ ~ ⑪ (생략)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⑬ (생략)

- ⑭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 ⑮ (생략)
-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 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

 - ⑮ (현행과 같음)
-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최초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34세 이하인지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임을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상공인 가입자격 확인서

⑤ 법 제9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운용·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
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
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 「주택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
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
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 4. (생략)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
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다.

④ (생략)

<신 설>

2.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이란 제2항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 -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5조의2제2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
다.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주
및 그 세대주의 배우자의 제2
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가 속
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
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서로 다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따른 그 세대주의 배우자와
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
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
대주의 직계존비속(그 배
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
자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생략)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생략)
 <신 설>

나.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및 형제자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양도차익} \times \left(\frac{\text{임대종료일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 당시 기준시가}} \right)$$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

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항 제2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산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 연도주식처분비율

2)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항 제2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⑥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 나목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2호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⑦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

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 제1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생략)
-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3. ~ 5. (생략)
- ② ~ ④ (생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결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 ③ ~ ⑭ (생략)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세 과세특례)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 7억원 -----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결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② ~ ⑦ (생략)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생략)

<신설>

-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연속하여 3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다.

<신 설>

--.

제99조의14(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 결과를 실태조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일의 다음날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납액”이란 채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⑤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멸대상채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15제4항에서 “신청일”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⑧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
계액

가. (생략)

<신설>

다.·라. (생략)

<신설>

<신설>

2. (생략)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
액

다.·라. (현행과 같음)

마. 「법인세법」 제18조의4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
액

바. 제2호다목에 따라 기업소
득의 범위에서 뺀 적립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
된 금액

2. (현행과 같음)

⑤ -----

7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⑥·⑦ (생략)

<신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

80-----

----- 30을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
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
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
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
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
액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제외한
다.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다목-----

-----.

1. (현행과 같음)

2. -----

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해당

--.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다목-----

----- 한정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 (생략)

⑪ (생략)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⑪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다목-----

-----.

1. 2. (현행과 같음)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다목-----

-----.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 ③ (생략)
 -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 ⑤ 삭제
 - ⑥·⑦ (생략)
-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 3.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 4.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 ③ (현행과 같음)
 - ④ ----- 5천원-----.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토지 등 대통령령-----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
- ②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
 - ③ -----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
 - ④ ----- 전단 및 제2항-----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⑥ 법 제104조의1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대체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초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자산”이라 한다)하고 해당 처분가액으로 새로운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04조의16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나.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처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다. 대체취득에 사용한 비율: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frac{\text{새롭게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text{처분자산의 처분가액}}$
--

2.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해당 처분가액으로 새로운 유가증권등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지 않는 경우: 제1호 가목의 금액에 제1호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⑦ 법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이란 제5항에 따라 -----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신설>

-----.

⑧ 법 제10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

-----.

⑨ 제5항-----

-----.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삭제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략)

<신설>

⑧ (생략)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⑩ ~ ⑬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⑧ (현행과 같음)

⑨ -----

-----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⑩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⑪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신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제2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현금배당총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제27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성향은 현금배당총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제27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제104조제27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04조제27제3항에 따라 분리과세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4조제27제4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상물동량-----

<신 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주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는 알코올분 8.5도를 말한다.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

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과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을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생략)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⑨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에

⑥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

----- . 다만, 과세연도 중 신규로 시장조성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조성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증권시장 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

⑨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⑩ ~ ⑱ (생략)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④ ~ ⑩ (생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략)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

⑩ ~ ⑱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복자산(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1. 2. (현행과 같음)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3. ~ 13. (생략)
⑦ ~ ⑰ (생략)
<신설>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불산입특례) ①·② 삭제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교육
비

3. ~ 13. (현행과 같음)
⑦ ~ ⑰ (현행과 같음)
⑱ 법 제126조의2제10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
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
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
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
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
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
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불산입특례)

③ ~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① (생략)
<신설>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경경제부장관은 법 제142
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
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세감면의
신설·확대·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와 이에 대응하는 세수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
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
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
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
행한 것으로서 영수증, 입금확
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
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경경제부장관은 법 제142
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
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세감면의
신설·확대·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와 이에 대응하는 세수

<신 설>

감소 보완대책을 비교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감면 신설·확대·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신 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효율성·형평성 측면의 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제도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세출예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 법 제142조제5항 -----

-----.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42조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42조제5항 -----

-----.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 재분배효과, 제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 3. (생략)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 3. (생략)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⑨ 법 제142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42조제6항 -----

⑪ 법 제142조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⑫ ----- 법 제142조제6항 -----

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⑬ 법 제142조제8항 -----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 법 제142조제7항 -----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규모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